

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부예산

가.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21 (화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6. 11. 27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6. 12. 7(목) 제13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-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6.12. 7) : 상정, 개요설명, 심사
-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06.12.18) : 심사보고서 채택

3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김 학근)

가.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에 심의·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3개 기금 33억 8,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,170만원이 감액되었음.

4.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함 경 호)

가. 2007년도 기금 총 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도	2006년도	증 감(△)
합 계	3,386,937	3,438,637	△51,700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05,470	95,154	10,316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322,137	2,311,421	10,716
평창군재난관리기금	959,330	1,032,062	△72,732

- 2007년도 평창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3개 기금에 33억 8,6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,170만원이 감액되었고,
- 기금 중
 - 식품진흥기금은 10.8% 증액된 1억 540만원
 - 사회복지기금은 0.4% 증액한 23억 2,200만원임
 - 반면, 재난관리기금은 7.0%가 감액된 9억 5,900만원으로 나타남

나.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(총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수 입					지 출		
	계	전입금	예치금 회 수	이자 수입	기 타	계	고유목적 사업비	이월액
계	3,386	560	2,718	94	14	3,386	750	2,636
식품진흥기금	105		88	2	14	105	7	97
사회복지기금	2,322		2,241	80		2,322	79	2,243
재난관리기금	959	560	388	11		959	663	295

다. 기금별 운용계획

1)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예치금회수	적립금이자	기타수입
105	88	2	14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고유목적사업비	예치금
105	7	97

○ 수입은 예치금회수(前기 전년도 이월액),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,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었음

○ 지출은

-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,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구입 등 일반 운영비에 780만원을 지출하고
- 잔액은 다음년도 예치금으로 이월할 계획임.

2)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예치금회수	전입금	적립금이자
2,322	2,241	0	80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고유목적사업비	다음연도이월액
2,322	79	2,243

- 본 기금은 2006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, 여성발전기금, 장애인 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, 여성의 복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계획으로 운용예정임.
- 재원은 예치금회수(전년도 이월액)와 이자수입으로 총당되고 있으며,
-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,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, 노인복지 사업, 여성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과 노인복지, 여성발전, 장애인 복지,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의 기금 재원으로 지출됨.

3) 재난관리기금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전입금	예치금회수	이자수입
959	560	338	11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고유목적사업비	다음연도이월액
959	663	295

-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
-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, 예치금회수(전년도 이월액)와 이자수입으로 총당되고 있으며,
- 지출은 응급복구장비 임차,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, 침수흔적도 작성 및 다음년도 이월금인 예치금재원으로 지출됨.

라. 검토의견

-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
 - 계획의 내용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단체 세입·세출예산과 같이 세입·세출을 장, 관, 항, 세항, 목으로 구분 작성되어 있음
- 다만 본 기금의 설치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현실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금의 관리 운용이 필요하며
-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, 적립금이자, 예치금회수금(전년도 이월액)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와 범위를 정하고 있어
-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되었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○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에서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용자는 할 수 없는 것인가 ?	○ 현재로서는 기금의 규모가 적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기금의 규모가 2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.

6. 토 론 요 지

(없 음)

7. 수정안의 요지

(없 음)

8. 심 사 결 과

(원안의결)

9. 소수의견의 요지

(없 음)
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(없 음)

붙 임 : 200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의결조서 1부. 끝.

2007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 의 결 조 서

-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 : 변동없음
-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(총괄) : 변동없음
-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: 변동없음
-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: 변동없음
-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: 변동없음

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3개 기금 3,3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2백만원이 감 되었음.
- 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7년예산액	전년도예산액	증감(△)
합 계	3,386,937	3,438,637	△51,700
평창군식품진흥기금	105,470	95,154	10,316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322,137	2,311,421	10,716
평창군재난관리기금	959,330	1,032,062	△72,732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1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 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,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